

6월 세무일지

12 (월)	원천징수세액신고 납부기간
	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
	종업원할 사업소세, 증권거래세신고 납부기한
	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
20 (화)	간이과세 포기신고기한
30 (금)	주세(교육세 포함) 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
	제1기분 자동차세(교육세 포함) 납부기한
	3월말 결산법인(외부, 자기조정) 법인세확정신고 납부기한
	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기한(연평균 10인 이하)

♣ 「3·30대책」은행대출 조건 강화. 개발이익의 50%까지 환수

오는 8우러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개발이익의 최대 50%가 환수됩니다. 또한 4월 5일부터는 강남권과 분당·일산 등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주택구입자의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(DTI)의 40% 이내로 제한됩니다.(본 대책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)

3·30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(입주) 때까지 집값(공시가격) 상승분에서 개발 비용과 시·군·구별 정상 집값상승률을 뺀 금액의 0~50%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. 부과 대상은 8월로 예상되는 법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단지부터 적용됩니다. 다만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,000만원 이하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개발이익의 40~50%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.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권은 부담금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고위 관계자는 "강남권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재건축을 못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부는 또 4월 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담보대출 기준을 담보인정비율(LTV) 한도에서 총부채상환비율(DTI) 한도로 변경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연소득 5,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년 만기·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한도가 종전 2억 4,000만원에서 5,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.

「3·30 부동산대책」 주요 내용

- 재건축 개발이익 최대 50%까지 환수
- 주택담보대출 축소
- 주택거래신고제 강화
- 택지조성비 낮춰 아파트 분양가 인하
- 중·대형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
- 서울 강북 등 도심 광역개발 본격화